

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5. 10. 2

나. 회부일자 : '95. 10. 2

3. 제안이유

○ 도내 각 분야에서 특별한 창의력을 갖고 연구 노력하는 개인, 단체, 법인등을 명예연구소로 지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거양하고, 나아가 도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명예연구소의 운영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지정요건 및 대상분야 (안 제2조)

○ 지정 및 행. 재정적 지원 (안 제5조 및 제6조)

○ 연구성과 평가회 개최 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도내 각 분야에서 특별한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노력하는 개인, 단체, 법인등을 충청북도 명예연구소로 지정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거양하고 도민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첫째, 지정요건 및 대상분야에 있어서는

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, 단체, 법인등 연구노력과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되

- 농업분야 : 농축산 품종개발, 신품종 묘목생산, 재배기술 개선등
- 공업분야 : 새로운 기계제작, 신제품 생산등
- 관광분야 : 새로운 관광상품개발, 향토음식개발등
- *○ 환경분야 : 폐기물 재활용, 환경오염방지, 신기술개발등으로 하고

둘째, 명예연구소 지정 운영에 따른 도정 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

- 명예연구소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
- 명예연구소에 대한 행·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
- 연구성과평가회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
- 기타 주요사항으로 하며

셋째, 명예연구소 지정에 있어서는

- 명예연구소 지정은 연 2회(1월, 7월)로 하도록 했으며

넷째, 명예연구소에 대한 행·재정적 세부지원 사항에 있어서는

- 예산범위내에서의 기술개발비 및 운영비 지원
- 명예연구소와 산·학·연 전문연구기관과의 연계
- 우수 명예연구소에 각종 시험사업 또는 용역의뢰

○ 필요한 정보, 자료제공

○ 각종 정책자금융자 및 해외연수시 우선권 부여등으로 하였고

다섯째, 연구성과 평가회에 있어서는

○ 지정된 명예연구소의 연구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말 연구성과 평가회를 개최하고

○ 평가결과 우수 명예연구소에 대하여는 시상할 수 있도록 하되 도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우수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여섯째, 지정된 명예연구소의 해제에 있어서는

○ 명예연구원 사망 또는 타시도 이주시

○ 명예연구소에서 해제를 원할시

○ 연구실적이 미흡할시는 지정된 명예연구소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등

농업 및 각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보급, 장려를 통하여 도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명예연구소의 운영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